

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허홍석 의원 발의】



2019. 3.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8호로 2019년 3월 14일 허홍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 및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운영인력, 휴관, 자료대출(안 제9조 ~ 안 제11조)
-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지원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지원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의 대출 및 교환·이관·폐기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지역문화시설·교육시설·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 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2) 사립 공공도서관
-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